

#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2021. 6. 16.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6월 16일(수) 10:55~19:09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138호~제139호, 보고 제32호~제33호)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1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 1) 회의록 보고

- 2021년도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38호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기존 주주로서 금번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은 어떤 분인지? 최대주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 (보고자) 금년 3월까지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퇴임을 해서 주식의 일부를 現최대주주에게 양도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39호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32호 『OOO OOOO OOOOOO에 대한 OOOO  
OO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개선권고사항 공개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가는지?

- (보고자) 품질관리시스템 6대 요소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간  
략하게 기술한 세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

- (위원) 무조건적인 공개보다는 공개하는데 있어서 체제를 먼  
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음.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 ‘라’군을 구분한 이유를 보면 각 군별로 감사하는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다를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군별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음. 시간을 정해서 2년이면 2년, 그래서 군별과 시간별 그 두 개를 조합하고 형평성을 감안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음. 지금 ‘가’, ‘나’, ‘다’, ‘라’군의 품질관리감리를 하는 기간(span)이 어떻게 되는지?

- (보고자) 대형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나머지는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위원) 지금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한 결과도 보면 Big4와 중·소형이 차이가 남. 군별 비교가 시장에서는 더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임.
- (위원) 비상장을 감사하는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는 한 공회에서 하고 상장법인 감사인은 금감원에서 함. 그런데 거의 200개에 육박하는 감사인들을 감리하는 품질관리기준은 동일한 기준임. 이런 동일한 기준을 갖고 제도가 운용되는데, 우리가 현실을 들여다보면 잘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Big4는 비교적 제도 구축과 운용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밑단으로 내려오면 제도가 제대로 도입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설사 형식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용이 미비한 곳도 있고 수준이 천차만별임. ‘가’~‘라’군 분류의 중요한 요소(critical fact)는 공인회계사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에 의해서 ‘가’, ‘나’, ‘다’, ‘라’군으로 실제 분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나’군으로 분류된 곳과 ‘라’군으로 분류된 곳의 품질관리수준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런 것을 제대로 살펴보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됨. 그래서 저는 품질관리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이 어떤 형태로 외부에 공개할 것이냐, 이것이 평판(reputation) 효과도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향후에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제대로 잘 충족하고 있느냐, 최종적으로 저는 등록취소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임. 그래서 지난 2020년 11월에 보고하실 때 해외 사례도 들여다보고 좋은 개선안을 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도 건수 위주로 언급을 하고 있음. 그래서 저는 품질관리 관련된 영국의 FRC라든가, 미국의 PCAOB 보고서를 보면 이런 개선과 관련된 건수도 나열되고 있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회계법인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 그리고 품질관리감리가 어떻게 수행이 되었는지에 관해 여러 가지 요소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회계법인이 품질관리를 어떤 수준에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어떤 것까지 있느냐 하면 Best practice도 소개되기도 하고 감독당국의 지적에 대해서 회계법인의 대응(response) 그런 것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한 번 공개가 되어 버리면 전례가 되어서 향후에도 계속 이 공개방식에 따라서 가야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당시에 증선위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는 듯함.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 ‘라’군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수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공개주기를 어떻게 할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공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장법인 감사인의 적정한 수준을 이끌고 갈 것이냐 하는 장기 계획(plan)까지도 포괄해서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음.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평면적이어서 기존에 2019년, 2020년 Big4뿐만 아니라 일부 회계법인 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입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니까 OOO O건, OOOOOOOOO O건 이렇게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분류(categorize)를 해서 제도 자체가 완전히 미비하다든가, 그다음에 제도는 있으나 운영이 잘 안 된다든가, 운영은 적절히 하고 있으나 미흡사항이 있다든가, 그렇게 큰 틀에서 내용을 구별을 해서 ‘가’, ‘나’, ‘다’, ‘라’군 간의 차별적 요소도 부각을 해야 될 것 같음.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음.

- (보고자) ‘개선권고사항 공개안(양식)’을 저희들이 붙여놓았음. 개선권고사항별로 어떠한 미비사항이 있었는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지를 보면 회계법인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미비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회계법인의 개선권고 사항의 건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미흡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Big4와 Non Big4, 중·소형 간의 위반내용의 질(quality)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음.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은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도 생각함. 군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품질관리감리를 해 보면 물론 Big4와 Non Big4를 봤을 때 수준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Non Big4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품질관리시스템 자체는 구축이 되어 있음. Big4와 Non Big4, 대형과 중·소형 간에 차별성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품질관리기준의 미흡 정도를 따져보면 사실은 대부분 일부 미흡 사항임. 완전히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들이 나타나는데 그 일부 미흡한 사항들이 품질을 따지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다른 공개기준을 달리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올림.

- (위원) 공개기준을 달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기준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소위 말하는 Big4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부에서도 서로 확인(check-up)이 되는데 Big4를 벗어나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관리라든가, 그런 체계는 형식적으로만 갖추고 있음. 최근 OO회계법인 같은 경우 통합 관리가 안 됨으로써 품질(quality)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큼. 그러니까 일부 중·소회계법인에서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는데 그 법인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음. 그래서 금감원에서 형식적인 면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한 단계 품질관리수준을 향상(level up)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임.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Big4같은 경우 지금 지적되는 내용을 보면 ‘① 제도 미

설계', '② 제도는 있으나 운영 미비', '③ 운용 중 일부 미흡사항' 3개로 나눠버리면 상당 부분이 3번에서 발생이 될 것임. 그렇지만 '라'군으로 가면 '① 제도 미설계'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serious) 문제임. 그것은 별개로 분류해서 외관적으로 보기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건수별 나열이 아니라 범주(category)를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품질관리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감리를 수행하고 그것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 말씀을 드린 것임.

- (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건수중심보다는, 조금 더 분류(categorize)도 하고 앞의 서론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감리를 진행했고 올해는 이것이 주안점(point)이었고 Big4는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제도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나 이러이러한 것을 특별히 주안점으로 봤더니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더라 그렇게 서술도 가미하고, 그런 공개방식에 있어서 외국에서 쓰고 있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금감원이 수용해서 정보이용자들이 이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림.
- (보고자) 그러면 공개안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경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보완을 하되, 경미한 사항인지의 판단 여부는 지금 보고 드린 (안)대로 진행하면 되겠는지?

- (위원) 경미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경미한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시각적인 것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Big4나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수준은 굉장히 높은 것임. 그러니까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Big4에서는 경미한 것까지 다 지적을 하는데 '라'군에서는 그런 것이 일체 지적이 안 됨.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음. 그런 것을 과연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것임. '가', '나', '다', '라'군의, 체격도 체력도 차이가 나는데, 어린애들은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냥 웃어넘기는 반면, 어른이 자꾸만 실수하면 그것을 지적하지만, 들여다보면 또 상장법인 감사인이고, 품질관리기준은 동일한 기준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람.
  
- (위원) 한공회에서 만든 품질관리기준은 회계법인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전부 똑같이 적용되는지?
  - (보고자) 품질관리기준에 보면 법률과 다르게 원칙 중심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전체적인 배경에서는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 큰 틀(outline)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기초(base)해서 지적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지적은 외부에서 볼 때 자칫 잘못하면 금감원의 자의적인 기준, 그때그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지적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아니겠는지?

- (보고자) 품질관리기준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내부통제임.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때 준수해야 될 내부통제에 대해서 갖추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품질관리기준에 따라서 회계법인이 내부적으로 내규화한 규정과 실제로 거기에 따라 하고 있는 양태로 봐서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회계법인과 충분한 토론(debate)을 하고 나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가지고 오는 것임.
- (위원) 제가 금감원에 요청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음. ‘가’, ‘나’, ‘다’, ‘라’군별로 품질관리감리와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존재한다면 각 군별로 어느 정도 차등화된 기준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차등화된 품질관리와 관련한 기준을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마련해야 된다면 그 내용은 각각 어떠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위원) 현재 금감원에서 제시하신 ‘경미’ 기준에 따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위원님들께 건의하신 것 같은데,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시피 증선위에서 그 부분은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임. 그에 대해서 금감원은 의견을 포함한 것 같으니까 금융위 쪽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미함과 중대함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사항들인지 그에 대한 의견을 증선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람. 그다음 품질우수사례와 관련해서 개별

법인에 대해서 품질관리가 우수하다는 것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음. 그런데 취지 자체가 대한민국 회계업계의 발전 그리고 회계관행의 개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품질관리감리를 나가서 잘하고 있는 것들, 중·소법인들한테 이런 것은 따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혹은 다수의 회계법인한테 발견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회계법인을 적시하지 않고 널리 알리는 것은 회계업계를 감독하는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람. 그다음에 군별로, 시기별로 달리해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비교를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집단끼리 함께 공개를 해 주라는 것임. 그래서 군별로 따로 공개를 하되, 아까 2년, 3년이라는 시기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군별로 따로 공개하는 방안 그리고 같은 군 안에서도 시기를 달리해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금융위 포함하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는 개선권고할 때 감리의 취지라든지, 제도의 취지 이런 내용들은 살을 많이 붙여서 그런 부분을 함께 얘기해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금감원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겠음.

- (위원장) 금감원과 금융위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필요하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보고안건 제33호 『OOO OO OO에 따른 OOOO OO 및 OOO OO OOOO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40호 『이그잭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41호 『(주)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

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대표이사 OOO임. 前CFO가 주도한 회계분식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음. 회사나 대표이사가 분식회계를 처리할 이유도 없었고 득을 본 사실도 없음. 분식회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대표이사 개인에게 고의분식회계 처벌은 너무나 가혹하고 억울하다고 사료됨.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 대표이사께서는 회계분식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OOO는 분식회계를 할 이유가 있었는지?
  - ▶ (진술인) 그때 당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함.
- (위원) 검찰통보 되는 내용이 3가지인데, CFO인 OOO씨가 이 3건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다 관련되어 있다고 진술을 했음. 그런데 제출하신 진술서를 보면 '전적으로 前 CFO인 OOO 개인적인 판단과 지시/진행 하에 이뤄진 회계사고입니다.'라고 경위를 내리시고 계신데, 그러면 회계분식을 지시했다거나 인감 위조한 것 그리고 감사 방해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은 정말 관여한 적이 없으신지?
  - ▶ (진술인) 결단코 없음.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는 범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또 그것으

로 인한 득을 본 사실이 없기 때문임. 그리고 대개 보면 CFO가 어떤 지시를 해서 직원들이 그것을 고발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들어봤습니다만, 본인이 해 놓고 본인이 퇴사한 이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음.

- (위원) 그런데 000는 진술을 하면서 “대표이사는 본인에게 이익을 더 크게 증가시키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외주가공비나 원자재 매입금액이 큰 항목 위주로 비용을 유형자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대표이사는 동 방안에 대해서 수용했다.” 그리고 000 인감 위조한 건과 관련해서 “대표이사가 계약서가 완성이 됐는데 날인이 필요하니 방법을 찾으라고 이야기해서 도용을 했다.” 그리고 “최초 결산 자료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대표이사의 이익조작 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근거가 없는 얘기인지?

▶ (진술인) 참 이해할 수가 없음. 제가 회계감사를 받거나 회계와 관련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음.

- (위원) 그러면 000씨와 사적인 원한관계 같은 것이 있는지?

▶ (진술인) 그런 것도 전혀 없음. 다만, 퇴사하기 전에, 스타트업 옵션을 다 팔았음. 그리고 사표를 내고 나서는 약간의 금품을 요구했음. 저는 퇴직위로금이나 격려금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주식 준 것을 개인이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보상이 된 것으로 여기고 더 이상의 요구는 무리라고 했음.

- (위원) 정리를 하면 CFO가 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요청했고 요구한 퇴직위로금을 안 줬더니 이분이 CEO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했다, 결국에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인지?

▶ (진술인) 제 자의적인 판단임.

- (위원) 분식회계를 하려면 목적이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동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금감원 측에서 어떤 동기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회사는 2015년부터 외부투자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었음. OOO CFO가 2017년 10월에 퇴사했는데 퇴사 전까지 투자유치 노력은 계속적으로 했음.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는 OOOOOOOO라는 회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실패한 사례도 있음.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재무상황을 보다 잘 보이도록 꾸밀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음.

- (위원) 대표이사께서는 분식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금감원은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CFO가 움직였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지금 조치안을 보면 두 분 다 검찰통보를 하지만 과

징금은 대표이사에게만 부과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진술이 불일치하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대표이사가 이 내용을 알고 수행했다는 증거로 품의서 얘기가 나옴. 대표이사가 이 내용을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는 진술 외에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감원이 그렇게 판단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2016년 허위취득 품의서, 2015년 허위취득 품의서 결재분인데 여기에 대표이사께서 모두 서명을 하셨고, 또 금감원 감리대응 과정에서 소급 작성한 2015년도 허위취득 품의서의 경우 CFO가 단독으로 회계분식을 주도한 것이라면 대표이사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례적으로 소급 결재를 했다는 것이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임. 그다음에 생산담당임원 OOO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허위품의서 및 계약서 작성에 깊숙이 관여하였는바 CFO의 단독결정이라면 업무상 결재라인이 다른 OOO가 중대한 불법행위에 관여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임. 특히 OOO는 회사의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2015년 당시에는 생산설비 구입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2015년, 2016년에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구매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허위취득 품의서에 결재를 한 사실도 있음. 유형자산 허위취득거래를 계상한 업체가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분이 소유주(owner)로 있는 OOOO이고, 또 회사의 최대 거래처이면서 오랫동안 거래한 대기업 OOO임. 설령 CFO가 단독으로 회계분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세 발각이 될 것임. 이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특별한 동기도 없이 CFO가 회계분식을 단독으로 했다는 말은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임. 2015년 및 2016년 등 기계장치 허

위매입금액은 각각 19억 5,800만 원 및 14억 400만 원인데, 허위매입금액을 제외한 2015~2016년 중 회사의 기계장치 매입금액을 보면 2015년에 공구와 기구 9,400만 원, 2016년에 기계장치 5,400만 원, 공구와 기구 2억 400만 원, 합쳐서 3억 5,200만 원이 됨. 2년 평균으로 하면 1억 7,600만 원밖에 안 됨. 이런 상황에서 20억 원, 14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으로 기계장치를 매수를 했는데 대표이사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서명(sign)했다는 것은 저희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 마지막으로 CFO가 단독으로 회계분식을 할 어떤 유인도 저희가 찾지 못했고, CFO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계분식을 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상황을 일관되게 저희한테 진술한 바 있음. 이상으로 종합할 때 이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대표이사가 지시 내지는 묵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였음.

- ▶ (진술인) 지금 말씀하신 건들에 대한 진술을 제가 금감원 조사 때 충분히 소명을 했음. 우선, 품의서 문제는 외부 회계감사 과정에서 품의서가 빠졌다고 금감원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것임. 그래서 저희 현재 있는 CFO하고 회계담당직원이 그것을 가져와서 “금감원 감리에 대응해야 되는데 서류가 하나 빠졌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서명(sign)을 해 준 것임. 그다음에 OOO한테 계약서를 가져갔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가져간 것을 물어봤음. 그래서 저희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물어보길, 물론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시다만, 그 진술에 보면 OOO가 그 당시 과거에 했던 양식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준 적이 있다고 함. 그다음에 OOOOOOOOO로부터 투자유치를 받고자 추진하게

된 경위는 보시다시피 저희 매출액이 매년 두 자릿수로 급상승해 오고 있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연구개발을 해서 대기업 응찰(bidding)을 통해서 수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설비 투자를 해야 됨. 저희가 작년에만 투자한 것이 350억 원임. 저희는 미래를 보고 지속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개발해 왔고 짧게는 3년 길게는 7~8년에 걸쳐서 투자하고 연구해 온 결과물이 수주를 하고 어떻게 생산 안 할 수가 있겠음? 제가 개인이 아무리 자활로 한다고 해도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음. 그러니까 초기에 68%라고 하는 지분이 28%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음. 저희는 투자유치를 해 왔고, 또 그때 당시 OOOOOOOOO에서 투자하기로 결정을 다 했었음.

- (위원) 금감원에서 조사된 내용과 진술이 서로 상반되기는 하지만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음.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셨지만 금감원의 판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여기 OOO라는 사람은 순순히 전모를 인정했는지?
  - (보고자) 그러함.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도 다 인정한 것임. 다만, 대표이사는 자기가 지시한 적이 없고 CFO 단독으로 했다는 것임.

○ (위원) 대표이사는 목인을 했다는 것인지?

- (보고자) 목인까지도 부인하는 상황임. 본인은 몰랐다, 그냥 결재서류에 아무 생각 없이 서명(sign)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소급 결재할 때 그렇게 큰 금액을 아무 생각 없이 서명(sign)하는 사람은 없음. “나는 그냥 사인했다.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관련 결재서류에도 서명(sign)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대표이사가 본인의 입장을 증명할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의’로 제재를 하려면 동기가 확실해야 되는데 금감원에서 적시한 동기가 좀 애매함. ‘금융기관 여신 등에 불리한 영향’이 ‘고의’로 하기에는 약한데 결국에는 투자유치 성과에 연동되어 자금을 조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계속 좋게 나와야 되는 그러한 제약조건이 있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42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직무대리)이 내용을 설명함.



통한 경영권 인수과정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음. 본 건 혐의사실인 사기적 부정거래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법적 소송을 통한 경영권 인수와 이후 경영권 정상화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하에서 발생하게 된 것임.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혐의자들의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있었음. 그러나 혐의자들의 미진한 업무처리에도 법률대리인으로서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림. 금융위원회에서 고발조치가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안들을 수행한 적이 있음. 중국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혐의자들이 이 과정에서 여러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보았음. 또 그 과정에 있어서 회복을 위하여 상당 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회복을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어 현재 고발 예정인 혐의자들에게 대하여 '수사기관 통보' 조치로 감경하여 주실 것을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주)는 現 경영진의 각고한 노력 끝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아 활동하고 있음. □□□□□(주)의 2020년 매출액은 前경영진이 경영하였던 2018년 매출액 대비 6배 이상 상승하였고, 자본잠식 역시 완전히 해소되었음. 2018년 700%를 상회하던 부채비율은 현재 120%로 하향되었음. 나아가 2018년과 대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직원을 고용한 상태로 일자리 창출에도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음. □□□□□(주) 現경영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사실상 가장 보호받아야 할 일반 채권자, 근로자, 소액주주들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이 분명함. 부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 ●●●●●는 □□□□□(주)(舊 (주)○○○○○○)가 제대로 영업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을 하는데 왜 참여를 했는지?

▶ (진술인) 이미 이전에 ■■■■■ 제안으로 금전이 상당히 투입된 상태였음. 그런 상황에서 ●●●●●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경영정상화가 되어야만 기존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전대여 대신에, 더 이상 담보제공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금전대여의 일환으로 유상증자에 들어가게 된 것임.

○ (위원) 더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어 유증에 참여를 했다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경영정상화가 되고 영업을 활성화 되어야만 이미 투입한 자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 (위원) 상폐 가능성에 대한 투자손실 보존 계약도 체결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회사인지? △△△△나 ☆☆☆☆☆ 그런 회사인지?

▶ (진술인) 관련 계약서가 저희 쪽에서 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측에서 제출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회제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음.

- (위원) 전임 대표이사가 횡령을 해서 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일이 있었는지?

▶ (진술인) 있음.

- (위원) 그런 와중에 자금관계가 연루되고 그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사모 CB 관련해서 자조단에서는 정보생성을 10월19일로 보고 공시를 11월29일로 보는데, 진술서에 보면 사모 CB에 대한 공시를 10월23일로 봄. 그래서 11월29일과 10월23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거래가 10월23일부터 11월29일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진술인의 의견이 맞다면 이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자조단은 공시를 11월29일에 했다고 하니까 자조단 얘기가 맞다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되는 것인데, 공시된 내용이 10월23일과 11월29일 중 어느 것이 맞는지?

▶ (진술인) 사모사채 발행결정 공시 자체는 10월23일이 맞음. 그리고 납입공시가 2018년 1월22일에 이루어지게 됨.

- (위원) 그러면 11월29일은 무엇인지?

▶ (진술인) 11월29일은 저희의 기억으로는 최초 CB 인수자가 戊이었음. 戊에서 인수인이 ○●○●○로 변경되는 공시였을 것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사모 CB 발행 정보 관련된 공시는 11월29일이 맞는지?

- (보고자) 맞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 전에 戊이라는 사람이 30억 CB를 인수한다고 했었는데 납입날짜가 모두 연기되어 실제 납입을 할 수 있는 A가 CB를 인수한다는 공시가 이때 뜬 것임. 그 전에는 CB 납입 공시 자체가 모두 연기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바닥을 치고 있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9시09분 폐회)